

2023년도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I. 사업개요

-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기업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급망(SCM) 연계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2023년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황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최대)	'23년 예산 및 규모
고도화1	중소·중견기업	■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 기업을 중심으로 개별 스마트공장 및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2억원	12개월	100억원 (50개)
고도화1 (동일수준)			0.5억원		

II.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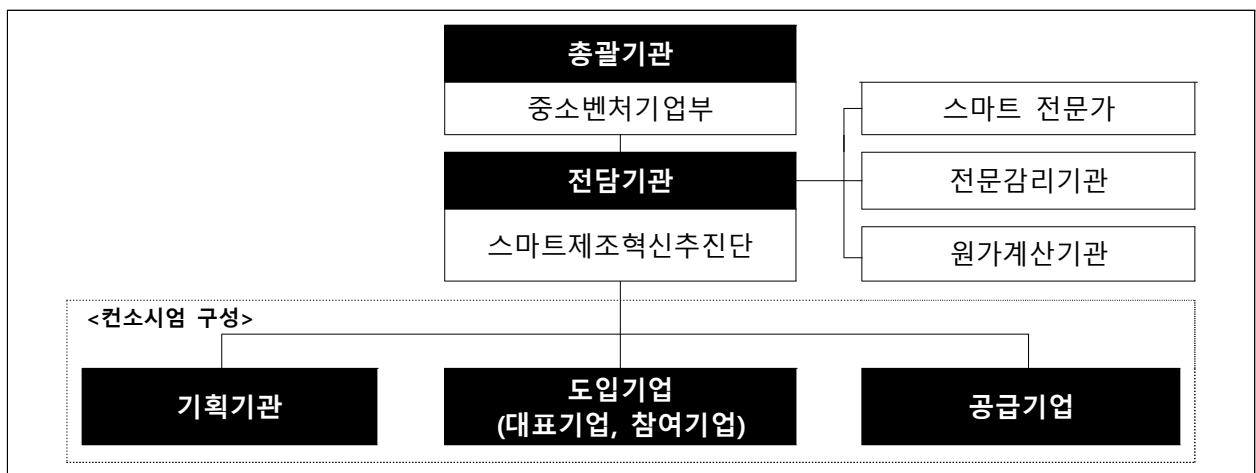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 공장 (공통)	모집 방식	-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모집·선정 진행 * '22년 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3년 사업신청 가능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								
	지원 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22)</th> <th>변경('23)</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고도화2 (4억원)</td> <td rowspan="3">⇒ 고도화1 (2억원)</td> <td rowspan="3">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td> </tr> <tr> <td>고도화1 (2억원)</td> </tr> <tr> <td>기초 (0.5억원)</td> </tr> </tbody> </table> <p>※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0.5억원 지원</p>	기준('22)	변경('23)	비고	고도화2 (4억원)	⇒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고도화1 (2억원)	기초 (0.5억원)
	기준('22)	변경('23)	비고							
	고도화2 (4억원)	⇒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고도화1 (2억원)										
기초 (0.5억원)										
초과 달성	-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최대 2억원) 지원 * (예시) 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수준이 중간이상으로 측정된 기업									
필수 교육	- 도입·공급기업은 하단의 관련 교육 의무 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td> <td>-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 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td> </tr> <tr> <td>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온·오프라인)</td> <td>-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진공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확인]</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 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온·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진공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확인]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 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온·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진공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확인]									
가점	- 대표기업이 ①지역스타기업,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③지역 주축산업 영위기업 중 최근 3년간(20~22년) 지역특화육성사업 선정기업 최대 3점 - 스마트공장 지자체 지원('기초단계') 확정·확약 컨소시엄 2점									

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대표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 스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구축비를 활용하여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지원

□ 추진체계



□ 지원내용

- (대표·참여기업) 유망 선도기업 등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기획기관) 전략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컨소시엄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 선정된 컨소시엄의 총 사업비 5%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단 컨소시엄 당 최대 10억원)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12개월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 사업비 구성(예시)

- 기업당 2억원 한도(고도화1 기준),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1.4억원), 공동·협업시스템(0.6억원), →5개 기업 턴키 지원시, (공동·협업) 3억원(0.6억원x5개)+(개별보급) 65억원(1.3억원x5개)+(기획기관)0.5(0.1억원x5개)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 구성			
	직접사업비 (50%)	민간부담금 (50%)	합계 (100%)	공동활용 (30%)	개별구축 (65%)	기획기관 (5%)	합계
합계	1,000	1,000	2,000	600	1,300	100	2,000
A 클러스터							
대표기업	200	200	400	120	260	20	400
참여기업1	200	200	400	120	260	20	400
참여기업2	200	200	400	120	260	20	400
참여기업3	200	200	400	120	260	20	400
참여기업4	200	200	400	120	260	20	400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 도입기업은 제조기업 기준 5개사 이상으로 구성(기획기관 제외)
 - (도입기업 컨소시엄)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급기업 컨소시엄)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공급기업 간 협력 등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획기관)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확산방안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자역TP 등

○ 공통사항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2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내 상생과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21일(화) ~ 2023년 5월 22일(월)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원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1년, '22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6	지자체 지원금 협약서 1부(해당시)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관련양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1차 선정평가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 클러스터 15개 선정(1.5배수)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①서면평가 → ②기술성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서면평가(100%)를 통해 1.5배수 선발	- 공급망 연계형 연결효과 등 평가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등을 평가
②기술성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 기술성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③현장확인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부 판정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④최종선정	-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승인(중기부)	-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연결효과,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서면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공급망 연결효과	◦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0
	◦ 공급망 확장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자체 예산 등) 확보 현황	10
	◦ 대표·참여기업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10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0
지원 적정성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10
도입기업 역량	◦ 매출액 증가율	10
	◦ 영업이익 증가율	5
	◦ 부채비율	5
총 점		100

② 기술성평가 : 공급망 연결 효과, 도입기업 역량,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술성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공급망 연결효과	◦ 컨소시엄의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추진전략의 우수성 및 구체성, 운영관리(유지보수 등)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
	◦ 기획기관의 보유역량, 사업수행내용, 성과확산 등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기업간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대표·참여기업간 공동이익 창출 및 배분 계획이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대표·참여기업간 연계(지자체 매칭 등)를 통한 전·후방 산업 확산 등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고용창출, 판로개척, 비용절감 등)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0
도입기업 역량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5

평가 항목		배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5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5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 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가점제외한 점수가 높은 기업, ②기술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③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③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 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확인]

- 권소시범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부처협업형, 로봇활용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3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가점 내용 : 컨소시엄 당 최대 3점까지 인정. 단, 지자체 '기초단계' 지원 협약서 제출기업은 별도 2점 가점 부여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점
지역스타기업	· 대표기업이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에 따라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지정서(공고일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지정이 유효한 기업에 한함)	3점
지역혁신 선도기업	· 대표기업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선정서 발급)에 따른 '선정서' 증빙(공고일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지정이 유효한 기업에 한함)	3점
지역주축산업 영위기업	· 대표기업이 14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축산업(41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20~22) 지역특화육성사업 선정기업 * 공장 주소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코드를 통해 주축산업 여부 확인	3점
지자체 스마트공장 예산 확보 기업	· 지자체 또는 지역TP를 통해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해 지자체 예산 확보 또는 확약을 받는 기업 * 지자체 또는 지역 TP 투자·지원 협약서	별도 2점

IV. 문의 및 연락처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관련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957, 0959

□ 지역별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협약체결 이후)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3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0628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19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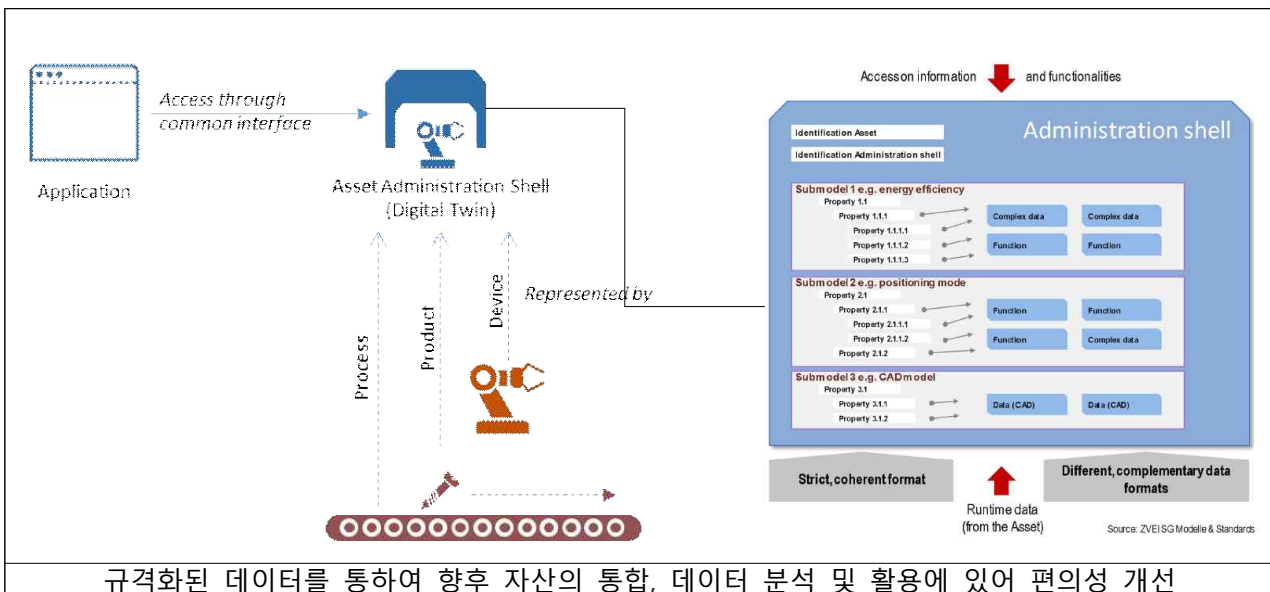
Asset Administration Shell 표준 소개

□ 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셸) 이란

○ Asset Administration Shell(AAS; IEC 63278 제정중)는 공장 내 자산*의 정보와 기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통합 표현 방식

- 각 자산의 정보와 기능에 관하여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자산/데이터 간의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줌

* 자산(Asset) : 스마트공장의 장비/설비 등을 포함한 사물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 시 필요 활동

○ (OPC-UA 통신 활용 중인 경우) AAS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장비/설비 AAS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수집과정에 규격 적용(데이터 맵핑 등)

○ (OPC-UA 통신 미활용 시) OPC-UA 변환 솔루션/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통신 프로토콜 통합 후 AAS 데이터 작성 및 규격 적용

* 작성 도구 및 관련 교육과정 제공 예정(스마트공장 1번가 내 안내 예정)
(문의사항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기획실 044-300-0927)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의 기대효과

○ 향후 AAS 기반으로 개발된 장비/솔루션/서비스 도입 및 증설 시 구축 비용 및 기간 감소, 기업 내 자체 데이터 분석 시 개발 편의성 개선

붙임 2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붙임 4

사업별 · 지역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 '23년 사업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구분	세부사업명
①스마트공장 구축 (일반형)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기초, 고도화)
②스마트공장 구축 (특화형)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③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④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⑤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⑥수준확인·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AS지원

○ 중복신청 가능유형

⇒ 1. ①, ②, ③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2. ①, ②, ③사업과 ④사업은 중복신청 가능

3. ①, ②, ③사업과 ⑥사업은 중복신청 가능

* 단, ①, ②, ③사업 수행 중 ⑥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동시수행 불가

4. ⑤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입(제조)기업이 아닌 공급기업

□ '23년 지원유형별 신청가능 여부 정리

구분	지원년도	현재수준*	목표수준('23년 지원가능 유형)	
			중간1	중간2
A	'14년~'19년	기초	○	○
		중간1	○	○
		중간2	X	○
B	'20년~'22년	기초	○	○
		중간1	△	○
		중간2	X	△
C	'19년~'22년 (수준확인 기업)	기초	○	○
		중간1	○	○
		중간2	X	○

* (현재수준) 최근 구축 기준의 수준을 의미(예시 : '19년에 구축하고 '20년에 구축한 경우, '20년도가 기준)

** △는 동일수준의 지원유형으로 최대 0.5억원 지원을 의미

※ 고도화1의 경우, 스마트화 수준 업그레이드로 중간1 이상을 목표로 구축

([㉠]ICT미적용 or 기초 → 중간1, [㉡]중간1 → 중간2)

※ 동일수준의 경우, 스마트화 수준별 1회만 가능([㉠]중간1 → 중간1, [㉡]중간2 → 중간2)

※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유형별 Q&A

① (유형 A) 19년도에 중간1로 구축 완료 한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② (유형 B) 20년도에 중간1로 구축 완료 한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목표수준에 따라 중간1의 경우 동일수준(최대 0.5억원)으로 지원 가능,
중간2의 경우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③ (유형 C) 20년도 수준확인결과가 중간1이었는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